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927
----------	-------

제출연월일 : 2026. 10. 1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며,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에 지방주거복지세 추가(안 제7조 및 제8조)

지방세 중 목적세의 세목에 지방주거복지세를 추가하여 특별시·통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세목으로 함.

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 추가(안 제40조제3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 기간에는 지방세징수권 소멸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안 제46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안 제108조제1항)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미제출 납세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140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당 3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세연구원 이사회의 구성 변경(안 제151조)

종전에는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를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지방세연구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이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회를 이사장, 부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원장을 원장 추천위원
회가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
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시세”를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시와”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특별시세”를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으로, “특별시 공무원”을 “특별시 공무원, 통합특별시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세와”를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 및”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역시의 군(郡) 지역”을 “통합특별시의 시·군 지역과 광역시의 군(郡) 지역”으로, “광역시세”를 “각각 통합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의 시·군세와 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주거복지세

제11조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지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하며, 이하”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하며, 이하”로, “둘 이상의 특별시”를 “둘 이상의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중전의 제12호)나목 중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환급받은 날 경과 후”를 “환급받은 날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로 한다.

12. 지방주거복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0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별제한법」”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점주주의”를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로, “과점주주가”를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이”로, “금액을”을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로 하고, 같

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5호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90조 중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를 “특별시세·통합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를 각각 “지방교육세·지방주거복지세와 특별시세·통합특별시세”로,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를 각각 “시·군·구세(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로, “지방교육세는”을 “지방교육세·지방주거복지세는”으로, “지방교육세를”을 “지방교육세·지방주거복지세를”로 한다.

제1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

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장부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계고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납세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3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제151조제2항 전단 중 “이사장과”를 “이사장, 부이사장 및”으로, “12명”을 “20명”으로, “감사”를 “지방세연구원에 감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장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⑥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연구원의 원장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지방자치단체”란 <u>특별시</u>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 <u>특별시</u> · <u>통합특별시</u> -----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u>특별시장</u>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 <u>특별시장</u> · <u>통합특별시장</u> ----- ----- ----- -----.
3. “지방세”란 <u>특별시세</u> ,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 · 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 <u>특별시세</u> , <u>통합특별시세</u> ----- ----- -----.
4. ~ 36. (생 략)	4. ~ 36. (현행과 같음)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특별시와</u>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	② ----- ----- ----- <u>특별시, 통합특별시</u> <u>및</u> ----- -----

하여는 도와 시·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② (생략)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특별
시, 통합특별시, -----
-----특별시세, 통합특
별시세-----
-----특별시장, 통합특별
시장-----
-----특별시 공무원, 통
합특별시 공무원-----

-----.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생 략)

<신 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
(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생 략)

2. 목적세

가. · 나. (생 략)

<신 설>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목적세

가. · 나.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시 · 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
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주거복지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 통합특별시세 및 ---
----- . ----- 통합특별시의
시 · 군 지역과 광역시의 군(郡)
지역 -- 각각 통합특별시세와
광역시세-----.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주거복지세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주거복지세

③ (현행과 같음)

④ -----통합특별시의 시 ·
군세와 광역시-----
-----.

1. ~ 5. (현행과 같음)

⑤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지방주거복지세

⑥ (생략)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 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 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내에 관한 것은 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등”이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세의 특례)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지역-----

-----.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하며, 이하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하며, 이하 ----- 둘 이상의 특별시·통합특별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11. (생략)

<신설>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생략)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1. ~ 11. (현행과 같음)

12. 지방주거복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3.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

다. -----
----- 환급받은 날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2. (생략)

<신설>

-----.
-----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

-----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이 -----

-----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

1.·2. (현행과 같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u>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u>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u>30만원</u>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u>45만원</u> ----- ----- ----- ----- -----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제90조(이의신청) ----- -----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특별시세·통합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 지방교육세·지방주거복지세와 특별시세·통합특별시세-
 ----- 시·
군·구세(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지방교육세·지방주거복지세는

지방교육세·지방주거복지세와 특별시세·통합특별시세-----
 ----- 시·군
·구세(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지방교육세·지방주거복지세를 -

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신 설>

-----.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140조의2(장부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계고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납세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날

	<u>부터 1일당 3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 9.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 운영) ① (생 략)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
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
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
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
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
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
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
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3의2. 제140조의2에 따른 이행
강제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
한 사항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사장, 부이사장
및 -- 20명 -----
---- 지방세연구원에 감사 ---
-----. 이 경
우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특별시장·통합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④ ~ ⑦ (생 략)</u>	<u>의 의결로 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u> <u>의결로 선출하며,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이사회</u> <u>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u> <u>④ 감사는 이사회</u> <u>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u> <u>⑤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와 특별시장·통합</u>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u>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u> <u>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사람을</u> <u>이사회</u> <u>의결을 거쳐 선출한다.</u> <u>⑥ 이사회</u> <u>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⑦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u>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88조 제1항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기준이 되는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통지 건수 감소에 따른 우편비용 절감
2	제108조 제1항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세외수입 증가
3	제140조의 2 신설 (장부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당 3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세외수입 증가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88조 제1항 (과세전적부심사)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제108조 제1항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제140조의 2 신설 (장부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 강제금)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 제8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기준 예고 통지 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통지 건수 감소에 따른 우편비용 절감 예상
 - 개정안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규모를 추계하고자 감소가 예상되는 과세 예고 통지 건수(52,920건)*에 우편비용(2,830원)을 곱하여 산출한 결과, 연간 절감 비용이 10억원 미만으로 약 1.5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 '25년 기준, 납세고지 하려는 세액이 각각 30만원(108,235건)·45만원(55,315건) 이상인 경우를 비교
- 개정안 제108조제1항은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상향하도록 하고 있어 세외수입 증가 예상
 - 과태료는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수입으로, 향후 개정안에 따른 위반 건수 감소 가능성, 향후 발생 건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 제140조의2는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외수입 증가 예상
 -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재적 성격의 수입으로, 향후 개정안에 따른 위반 예방 효과, 납세자별 의무 이행 시점 불확실성, 위반 발생 규모의 예측 한계 등으로 인해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장민영	김성현	김정선	이현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민영	044-205-3811	minyeong3539@korea.kr